

통지서 수령인 선정(변경)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신고인 인적사항	성명				생년월일		
	주소				전화번호		
	병역사항						
통지서 수령인	구분	성명	생년월일	주소	본인과의 관계	전화번호	서명 또는 인
	처음						
	변경						

「병역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(변경)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귀하

유의사항

- 통지서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 중에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.
-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※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
- 신고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.